



인 천 구 치 소

수신자 강성준 귀하 (우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천주교인권위원회)
(경유)

제 목 정보공개 청구외([]부존재 [] 진정·질의 [] 종결 등) 통지서

접수번호 10981143	접수일 2023. 07. 10.
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<p>청구 내용</p>	<p>1) 2023년 6월, 1-1) 수용자 수용실 및 작업공간에서 측정한 온도 및 습도(측정 일시 및 장소별) 1-2) 위 온도 및 습도 측정 시 측정 시간대 및 주기, 측정 장소, 측정 방식, 측정 기록의 보관 의무 유무 및 보관 기간 1-3) 상수도 단수 조치가 있었다면 단수 일시 및 지속 시간, 단수의 사유 1-4)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은 수용자의 수 및 이로 인한 사망 수용자의 수(교정시설별)</p> <p>2) 교정 법령 및 지침상 수용실 및 수용자 작업공간의 적정 온도(여름철 최고온도와 겨울철 최저온도) 및 습도의 기준(계절별, 시간대별)</p> <p>※참고: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부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-----------	--

<p>정보 부존재, 진정·질의, 종결처리 사유 등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</p>	<p>정보부존재 사유 :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·접수하지 않은 경우</p> <p>청구인께서 청구하신 청구 내용은 산하기관인 본 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·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부존재 통지합니다.</p> <p>*안녕하십니까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.</p> <p>1-1) 수용동에 온도계가 있는 수용거실이 있으나 따로 온도를 기록하는 자료 및 장부는 없습니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습도에 관해서는 측정하는 장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</p> <p>2)규정상 적정온도 및 습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.</p>
--	---

<p>민원처리 결과 및 종결처리에 관한 추가 안내사항</p>	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

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 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.

인천구치소장

교위 최종배 교감 이교우 교정관 이종선

협조자

시행 특별사법경찰팀-382(2023. 07. 18.)

우 2222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 학익동, 인천구치소

전화번호 032-868-8771

팩스번호 02--

/ cho8854@naver.com

/ 공개 구분

유의사항

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